



19. 피고인

제4절 당사자 능력과 소송능력

• 당사자 능력

| | |
|-----|---|
| 자연인 | O - 언제나 X - 사망 |
| 법인 | O - 처벌규정 X - 소멸 → 판) 청산, 소송 중 - 소멸 X |
| X | 공소기각 결정 |

• 소송능력

| | |
|---|---------|
| X | 공판절차 정지 |
|---|---------|

20. 변호인

- 선정 + 실질조력 조치
- 국선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→ 행정절차에서 구속당한 사람에게도 보장
 - (출입국관리사무소)
 - 헌법 제12조 4항의 '구속'에 행정절차의 구속에 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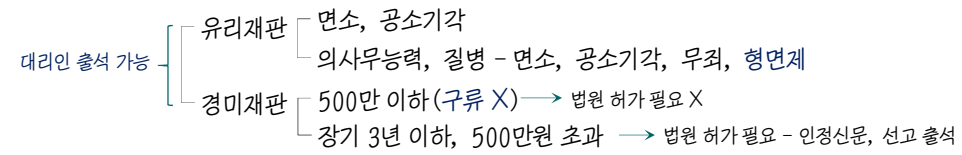
23. 소송서류 등

효과 [최초 - 2주]
2회 이후 - 5일] ⇨ 송달 간주

예외-판) [변론종결전 허가
방어권, 변호권 본질 침해 X
↓
(방어권, 변호권 본질 침해 0, 변론종결 전 허가 X
⇨ 조서 증거능력 X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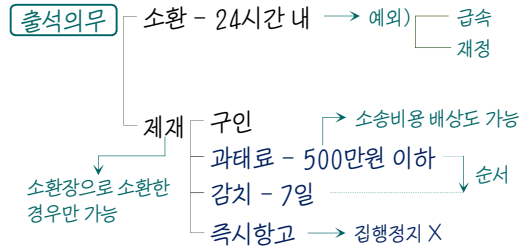
24. 공판절차의 개요



즉결 - 벌금, 과료 (구류 X)

27. 공판기일의 절차

• 증인의 의무



• 증인의 권리

증언거부권 의의 - 출석 자체 거부 X ↔ 증언거부권 (공무상 비밀)

29. 증거와 증명의 기본원칙

[
고의
양심]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로 입증

29. 증거와 증명의 기본원칙

•

| 구분 | 내용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객관적 구성요건 | <p>행위의 주체, 객체, 행위, 결과의 발생, 인과관계, 범죄의 일시, 장소 교사법에 있어 교사의 사실 위드마크공식의 전제사실인 음주량, 음주시각, 체중, 평소 음주정도 알리바이의 부존재 구 도로법 제54조 제2항에 의한 ‘적재량 측정 요구’ 교사법에 있어서의 교사사실 횡령죄에서 피해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 뇌물죄에 있어 수뢰액 범죄단체의 구성, 가입행위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특정경제범죄의 적용기준금액을 초과한다는 사실</p> |
| 주관적 구성요건 | <p>고의(범위) 목적 공모나 모의의 사실 불법영득의사</p> |
| 위법성조각사유와 책임 조각사유의 부존재 | <p>정당방위의 요건사실 피해자승낙의 부존재</p> |
| 처벌조건 | <p>친족상도례에 있어 일정한 친족관계의 부존재 사전수뢰죄에서 피의자가 공무원이나 종재인이 된 사실 파산범죄에 있어 파산의 확정 등</p> |
| 법률상 형의 가중·감면이 되는 사실 | <p>누범전과, 상습법에서 상습성 중지미수(자의성)</p> |
| 그 외 | <p>외국법(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) 민간인이 군에 입대하여 군인신분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 주요사실이 엄격한 증명을 요할 경우 간접사실</p> |

30. 자유심증주의,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, 자백배제법칙

일부 진술 - 진술조서 중 일부만 믿고 다른 부분 믿지 않는 것도 가능

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반대신문X → 원칙적으로 이를 주된 증거로 유죄 인정 불가

동의하더라도 마찬가지 (증명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)

압수물 (피해품)의 존재만으로 유죄의 증거 X

어느 것을 믿든 자유심증



30. 자유심증주의,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, 자백배제법칙

| 증거능력 O | 위법수집증거 O ⇨ 증거능력 X |
|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다가 피압수자에게 환부한 다음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한 경우(임의성이 있는 경우) - 3인 간의 대화에서 그 중 한 사람이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경우 - 고소인이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증거물 - 사인(私人)인 제3자가 절취한 업무일지를 소송사기의 피해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, 그 업무일지 - 비변호인경전이 금지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신조서(임의성 인정) - 변호인경전 전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- 무인카메라에 의한 속도위반차량 단속 -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에 관한 규정들을 근거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강제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우 - 교도관이 재소자의 비망록을 임의로 제출한 사례 - 긴급체포 후 석방 30일 내 법원 통지 않은 경우, 긴급체포 당시 작성 조서 - 법정대리인 등의 없이 미성년자가 자신의 혈액을 임의제출한 사례 - 인터넷서비스이용자를 상대로 피의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·수색하는 경우 - 원격지(외국 포함)의 저장매체에 접속하고 전자정보를 내려 받거나 화면에 현출시키는 방법의 전자정보 압수·수색 - 음주운전으로 체포·구속하지 아니하고, 그 차량의 열쇠를 병행 중 또는 병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의 압수로 압수한 경우 -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임의제출한 사례 - 시청공무원이 권한 없이 전자우편에 대한 비밀보호조치를 해제하고 시장의 전자우편을 수집한 경우 - 지문채취 후 대상물 압수한 경우 그 지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피고인이 구속되어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조사를 받다가 변호인의 경견신청이 불허되어 이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 중에 경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하여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준항고 절차에서 위 경견불허처분이 취소되어 경전이 허용된 경우,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위 피의자신문조서 - 甲이 휴대전화기로 乙과 통화한 후 예우차원에서 바로 전화를 끊지 않고 기다리던 중 그 휴대전화기로부터 乙과 丙이 대화하는 내용이 들리자 이를 그 휴대전화기로 녹음한 경우 -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은 통신기관 등이 집행에 필요한 설비가 없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설비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하는데, 그러한 요청 없이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 -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물건을 긴급 압수하고도 사후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경우, 그 압수물 - 소유자,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'압수물' 및 '압수물을 찍은 사진'(동의하여도 증거능력 X) - 변호인경전이 금지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-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-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-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참고인 진술 - 제척사유가 있는 특약인이 특약한 증인의 증인신문조서 -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,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- 영장없이 사실상 강제연행한 상태에서 받은 자술서 및 진술조서 -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(사전에 필수 정보를 입수하여 통제배달을 위해) 특정한 수출입물종을 개봉·검사하고 그 내용물의 정유를 취득한 행위 - 제3자에게 위탁하여 '대화의 녹음·청취'를 하는 경우 - 제3자가 전화통화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얻어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 - 사법경찰관이 현행범 체포의 현장에서 소지자로부터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하고 사후에 압수·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사례 - 압수영장에 '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'으로 기재하고 압수장소에 현존하고 있는 물건을 압수한 경우 - 수사기관이 영장에 따라 압수·수색하는 과정에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다가 피압수자에게 환부한 다음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한 경우, 그 압수물의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-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당시,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하여 집행하고,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·교부하지 않은 경우 - 대화 참여자 아닌자가 타인간 대화, 전화통화 녹음한 사례 - 제3자가 일방 동의없이 녹음한 경우 - 영장에 압수대상으로 'OOO일체' 등으로 기재된 일반영장 -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에 관한 규정들을 근거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강제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우 |
| <p>* 군검사가 형사사법공조를 거치지 않고 뇌물공여자 조사한 사례 (위 법수집증거는 아니나 특신상황이 없어서 증거능력 X)</p> | |



30. 자유심증주의,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, 자백배제법칙

자백

↓
모든
자백

30. 자유심증주의,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, 자백배제법칙

• 임의성 인정 v 임의성 부정 판례 비교

| 임의성 인정 | 임의성 부정 |
|---|---|
| <p>① 비변호인과의 접견이 제한된 상황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그 조서가 임의성이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.</p> <p>②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사건을 송치받은 당일에 작성된 것이었다 하여 자백진술이 임의성이 없거나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 의심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.</p> <p>③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거나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 등의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약속 하에 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.</p> <p>④ 사법경찰관아...</p> | <p>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백하고 이어서 진술서를 작성. 제출하고 그 다음 날부터 연 3일간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백하는 내용의 양심서 등을 작성. 제출하고 경찰의 검증조서에도 피고인이 자백하는 기제가 있으나, 경찰에 송치되자마자 자백은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할 뿐더러 연 4일을 계속하여 매일 한 장씩 진술서 등을 작성한다는 것은 부자연하다는 느낌이 드는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의 자백은 신빙성이 희박하다.</p> <p>②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, 그 후 검사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 강요행위가 없었다라든가 검사 앞에서의 자백은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.</p> <p>③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, 그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법정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.</p> <p>④ 경찰에서의 자백이 잠을 깨우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닌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.</p> <p>⑤ 검찰주사가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피의사실 부분은 가볍게 처리하고 보호감호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백을 유도한 경우에는 자백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.</p> <p>⑥ 자백하면 가벼운 형으로 처벌받게 해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주고 얻은 진술로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.</p> <p>⑦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며, 검사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그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.</p> <p>⑧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절도)죄 대신 형법상 절도죄를 적용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백을 유도한 경우 자백의 임의성은 부정된다.</p> <p>⑨ 검사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가벼운 수뢰죄로 처벌받게 해주겠다는 약속에 의하여 자백한 경우, 자백의 임의성은 부정된다.</p> <p>⑩ 구속영장 없이 13여일 간 불법 구속되어 있으면서 고문이나 잠을 깨우지 않는 등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사유가 있는 증거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.</p> <p>⑪ 피의자신문에...</p> |

31. 전문법칙

- ① 전문증거가 아니다.
- ② 오증사실 자체이다.
- ③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되지 않는다.
- ④ 검증조서에 제311조가 적용된다.
(제312조나 제31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.)
- ⑤ 대체물이 아니다.

31. 전문법칙

• 전문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교

| 전문증거에 해당하는 예 |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 예 |
|---|---|
| ① 피의자를 신문한 경찰관의 법정증언 | ① 경험사실을 직접 진술 ⇨ 원본증거 |
| ② 진술서 | ㉠ 현행범인을 체포한 사법경찰관이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 한 법정증언 |
| ③ 진술조서 | ㉡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 |
| ④ 공판과정에서 작성된 조서 | ㉢ 범행목적자의 공판정에서의 증언 |
| ⑤ (공포감 등을 일으키는 문자를 전송받은) 피해자가 제3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는 데 사용된 휴대전화 화면 (사진) | ㉣ 공판기일에서의 감정인의 진술 |
| ⑥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, 그 기재 내용 진실성에 관한 부분 | ㉤ 범죄피해자의 법정증언 |
| ⑦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전화대화의 내용이 검증조서에 첨부된 녹취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는 검증조서 기재 중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 (제311조가 아니라 제313조에 의해 증거능력 인정) | ② 원진술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 |
| ⑧ 횡령죄에서 변호사의 의견서 | ③ 원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 |
| | ㉠ B가 C를 깨안은 행동이 폭행인지 우정의 표현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 장면을 목격한 A가 법정에서 “B는 C에게 나쁜 놈이라고 격노에 찬 말을 하였다”라고 증언한 경우, A의 증언 |
| | ㉡ 피고인 B의 정신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A가 “평소 B는 자신이 신이라고 말하였다”고 증언한 경우, A의 증언 |
| | ㉢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법원이 그 진술당시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한 검증조서 (제313조가 아니라 제311조에 의해 증거능력 인정) |
| | ㉣ 진술 당시 진술자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된 진술 |
| | ④ 비진술증거 |
| | ⑤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부도수표 (사본) |
| | ⑥ 무고죄의 고소장 |
| | ⑦ 협박죄의 협박을 위해 사용된 말, 협박편지 |
| | ⑧ 명예훼손죄의 명예훼손을 위해 사용된 말, 편지, 사진, 휴대폰 문자(사진), 유인물 |
| | ⑨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공포감 등을 일으키는 문자 전송에 사용된 휴대전화 화면 (사진) |
| | ⇨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, 그 사진의 영상이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 |
| | ⑩ 사기죄의 기망의 말을 들었다는 진술 |
| | ⑪ B가 무고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A가 B로부터 “C가 훔치는 것을 보았다”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증언한 경우, A의 증언 |
| | ⑫ 甲이 공판정에서 “乙로부터 ‘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여행사에 대금을 대신 내주면 잘 봐 주겠다’라는 말을 들었다.”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경우, 甲의 진술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이 ‘乙이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’는 것이라면 甲이 乙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는 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에 해당함 |
| | ⑬ A의 알선수재사건에서 “건축허가 담당공무원에게 내 (B)가 사례비 2천만원 추기로 상의하였다”는 B의 증언 |
| | ⑭ 국가기밀 탐지·수집 사건에서 국가기밀 물건 |
| | ⑮ F가 한 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, F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G의 진술 |

-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로 증명
(개연성 있다는 정도로 증명 X)
- 314조, 316조 해석 동일

↑
특신상황



- 외국수사기관 (FBI 등)
조서에서 적용
- 제314조

의의 제312조, 제313조
공판기일, 공판준비기일 출석 × ⇨ 증거능력 부여



의 의

기재사항

서명·날인

양형기준

기 타

35. 중국재판

양형

- ㉠ 법원 재량
- ㉡ 양형부당만 이유로 항소
 - ↳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유로 상고 불가
- ㉢ 항소심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1심 양형 존중
 - ↳ 항소심에서 1심과 별 차이 없는 형 선고 자제 바람직
- ㉣ 상고심은 항소심 양형 존중
 - ↳ 항소심 양형부당 판단이 다소 바람직 하지 않아도 위법 X

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

↳ '실체관계 부합하는 등기'라 주장

↳ 판단 X

(위법성, 책임) 조각 - 구성요건 X

알리바이 X

고의 X



| | | 포기 | 취하 |
|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고유상소권자 | 검사 | ○ | ○ |
| | 피고인 | (법정대리인 有 ⇨ 동의필요) (사형, 무기 -X) | (법정대리인 有 ⇨ 동의필요) |
| 법정대리인, 상소대리권자 | | X | ○ (피고인 동의 필요) |

법정대리인의 사망 등으로 동의 불가시
⇨ 동의 불필요

- ※ 동의 X ⇨ 효력 X
- ※ 포기권자 ≠ 취하권자
- ※ 동의 ⇨ 구술로도 가능, 명시적

| 상소권 회복 인정 0 | 상소권 회복 인정 X |
|-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부적법 공시송달, 판결선고 인지 X ②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 X, 위법한 공시송달 ③ 교도소장 결정정보 수령 1주일 후 전달 ④ 피고인 출석 ⇨ 선고기일 불출석 ⇨ 소속법 공시송달, 불출석, 선고 사실 모른 채 상소기간 도과 ⑤ 교도소 수감 중, 이외 장소 송달 ⑥ 법원직원이 정식재판청구서 보정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변호인이 상소한 것으로 잘못 안 경우 ② 선고 잘못들은 경우 ③ 교도소 담당 직원이 편의 X ④ 거주지 변경 신고 X ⑤ 주소지인 사무소에 나가지 않아 송달받지 못한 경우 ⑦ 사무소에 나가지 않아 송달 X ⑧ 공동피고인의 기망 |

적용X

- ③ 쌍방이 상소한 결과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파기 된 경우,
환송 전 후
 - ↳ 쌍방이 피고사건 및 부작명령 청구사건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
검사가 부작명령 청구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- ④ 다른 사건 (경합범)이 병합된 경우
- ⑤ 상고심 정정, 소송비용, 피해자 환부, 신상정보 고지 누락 정정



37. 상 소

| 불이익 O | 불이익 X |
|---|--|
| ① 주형 그대로 ⇨ 위치추적 장치 기간 증가 (추가) ② 주형 그대로 ⇨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추가 ③ 징역 2년, 집행유예 3년 ⇨ (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) 과 (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) 및 (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) | ① 징역 장기 7년, 단기 5년, 위치추적장치 5년 ⇨ 징역 장기 5년, 단기 3년, 위치추적 장치 20년 ② 징역 15년, 위치추적장치 5년 ⇨ 징역 9년, 위치추적장치 6년, 공개명령 5년 ③ 제1심에서는 청구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처음 청구된 전자장치 부착명령 부가 ④ 징역 5년,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및 추징 18만원 ⇨ 징역 5년,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, 추징 18만원, 취업제한 5년(취업제한 명령의 선고 없더라도 5년간 취업이 제한됨) ⑤ 신상정보 고지 누락 정정 |



↳ 배우자가 항소한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하여야 함
항소인, 상대방



37. 상 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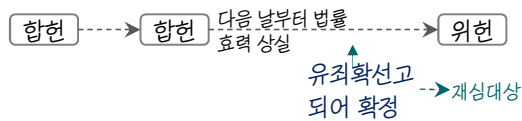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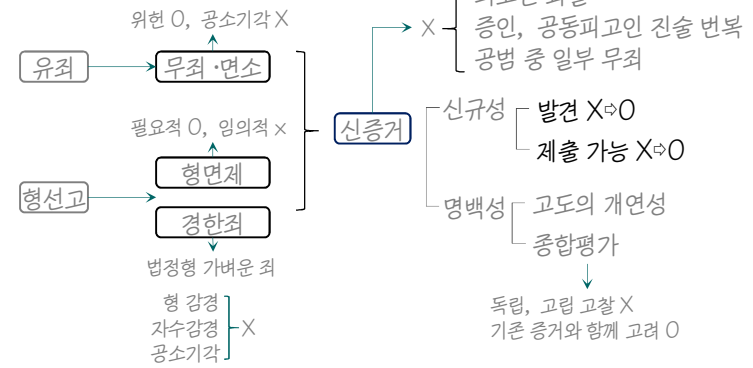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적법한 항소이유서로 볼 수 있는 경우 | 적법한 항소이유서로 볼 수 없는 경우 |
| 피고인 ⇨ ‘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억울한 판결이므로 항소’ | 검사 ⇨ ‘사실오인 및 법리오해’ |

국선에게 통지 후 선임된 사선에게는 다시 통지할 필요없음

| | |
|---|--|
| 국선번호인 선정 X,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경과 | 국선번호인 선정 ⇨ 별도의 소송기록 접수통지, 항소이유서 제출 이유 기회 부여 (바로 항소기각 결정 X) |
| 국선번호인 선정 X,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경과 ⇨ 사선번호인 선정 | 사선번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 ⇨ 항소이유서 제출 기회 부여 |
| 국선번호인 선정 ⇨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| 새로운 국선 선정 ⇨ 통지 ⇨ 항소이유서 제출 기회 부여 |
| 국선 선정 후 다른 사건 병합 | 병합 사건 소송기록 접수통지 |

38. 비상구제절차

• 신규증거





38. 비상구제절차

- 법률 폐지, 위헌



•

| 비상상고 X | 비상상고 O |
|--------|--------|
| | |



즉결심판 실효 - 정식재판 확정시 → 재판이 있을 때 O, 청구시 X



유죄판결 선고시에만 가능 → 유죄 판결과 동시에만 가능

40. 집행

- 발부: 검사 → (법원 X, 법관 X)
-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
- 피고인 구속에 관한 규정 (영장 집행에 관한 규정) 준용 → 구속사유(70조), 이유고지(72) 준용X
 - 사건 제시 필요 - 예외) 급속을 요하는 때
 -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한 구인의 경우도 제시 필요
 - 예초 사법경찰관리가 적법하게 발부된 형집행장을 소지할 여유가 없이 형집행의 상대방을 조우한 경우

00. 부록

- 음주측정거부 0
 - 적법한 보호조치 대상자 경찰관서로 데려온 직후 측정 요구
 - 운전 종료 후, 2시간 경과하여 집에서 측정 요구
 - 음주감지기 거부
 - 음주측정 불응 -> 스스로 혈액채취 요구

02 강제 채뇨

- 보충성 → 최후수단
- 방법
 - 숙련된 의료인, 의료장비와 시설
 - 피해자의 고통감 최소화 방법
- 감정에 필요한 처분 or 압수수색

| 방법 | 채뇨 | 병원유치 |
|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압수수색 | 압수명장 | 별도명장 X (필요한 처분) |
| 감정에 필요한 처분 | 감정허가장 | 감정유치장 |



- 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또는 구속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(7)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.
- ㉡ 법원은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(7)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.
- ㉢ 증인이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을 (7)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.
- ㉣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(7)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나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㉤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, 공소의 취소 또는 타관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(7)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.
- ㉥ 검사는 고소·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(7)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.
- ㉦ 지방경찰청 검사장·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(7)일 이내에 재정신청서·의견서·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고등법원에 송부한다.
- ㉧ 검사 또는 피고인은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(7)일 이내에 항소,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.
- ㉨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(7)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.
- ㉩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(7)일 이내에 「형사소송법」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- ㉪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 원칙. 다만,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(7)일이 넘는 기간 정할 수 있다.
- ㉫ 피고인은 안내장을 포함한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(7)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㉬ 배상명령에 대해 피고인은 (7)일 이내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.
- ㉭ 형사보상결정에 대하여는 (1)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
* 소년보호처분 - 7일내 항고